

"광복70년" 위대한 여정, 새로운 도약



공정거래위원회



수신 수신자 참조
(경유)

제목 설 명절 이전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 운영 관련 협조 요청

1. 귀 단체(사)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우리 위원회에서는 연말 연시 및 설 명절 이전, 기업들의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중소기업들이 하도급대금 등을 적기에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, 중소기업의 원활한 하도급대금 지급을 위해 2015.12.21.~ 2016.2.5. 기간 동안 <붙임1>과 같이 특별히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를 운영할 예정입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 귀 단체 소속 회원사들에게 하도급 대금을 지연하지 말고 설 명절 이전에 적기 지급하고, <붙임2>와 같은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들이 「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」에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·지도 하여 주시기를 협조 요청합니다.

- 붙임 : 1. 불공정하도급신고센터 설치 현황 1부.
2. 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 1부. 끝.

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



수신지 대 한상공회의소장, 한국경영자총협회장, 전국경제인연합회장, 대한건설협회장,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,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장,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장, 한국생유산업연합회장

행정사무관 윤광욱 제조하도급개 전결 2015. 12. 16.
선과 과장 이유태

협조자

시행 제조하도급개선과-1349 (2015. 12. 16.) 접수

우 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승3로 95 (어진동, 공정거래위원회) / www.ftc.go.kr

전화번호 044-200-4603 팩스번호 044-200-4657 / abctoz@ftc.go.kr / 대국민 공개

<붙임1>

권역별 '불공정 하도급 신고센터' 설치 현황

지 역	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		업무분장	전담자 전 화 번 호(FAX)
수도권	공정위 서울 사무소	건설하도급과	사건처리 및 상담(건설)	02-2110-6152 (02-2110-0654)
		제조하도급과	사건처리 및 상담(제조)	02-2110-6167 (02-2110-0655)
	분쟁 조정 협의회	공정거래조정원	사건처리 및 상담	02-2056-0048 (02-2056-0049)
		건설협회, 전문건설협회	사건처리 및 상담	02-549-2105 (02-516-5360)
		중소기업중앙회	사건처리 및 상담	02-2124-3142 (02-780-2448)
경남권	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		사건처리 및 상담	051-460-1045 (051-460-1004)
전라권	광주지방공정거래사무소		사건처리 및 상담	062-975-6841 (062-975-6800)
충청권	대전지방공정거래사무소		사건처리 및 상담	042-481-8018 (042-481-8023)
	공정위 제조하도급개선과		총괄 및 제조하도급 상담	044-200-4603 (044-200-4657)
경북권	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		사건처리 및 상담	053-230-6344 (053-742-9150)

* 신고센터 총괄 :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 제조하도급개선과(044-200-4603)

<붙임2>

예상되는 주요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 유형

-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하도급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지연지급하면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하도급 대금을 장기(만기일이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초과) 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수료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
-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한다거나, 어음 할인료·지연이자 등을 함께 지급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
-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
-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 업체에게는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지급(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초과)하는 행위
-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하도급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거나, 발주자로부터 교부받은 어음의 결제기간(발행일부터 만기일까지)보다 장기의 어음을 교부하는 행위
- 하도급 업체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하도급 대금을 미분양아파트 또는 상품, 상품권 등으로 지급하는 행위
- 원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원가절감 목표액을 설정하여 이를 하도급 업체에 할당하여 감액하는 행위 등